

보고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보고자
제 60 호	제 9 차	1991. 4. 18	윤재검건

보 고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

보고사항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제3조의2에 의거 금융기관의 여신취급시 담보취득제한대상 부동산중에서 담보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개정하여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에 규정하였기에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함

보고관계
법규조항

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제2조 (여신운용 및 투자지침)

금융기관은 「한국은행법」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물건전만 여신 또는 투자를 조래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의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.

1. ~ 8. (생 략)

9. 한국은행증제가 정하는 대출, 투자, 지급보증 및 인수업무의 취급 기준과 용도별 한도의 준수

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제4조 (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)

한국은행증제는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여신취급기준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 내용

연	영	개	정	비	고
제1조 ~ 제4조 (성	락)	제1조 ~ 제4조 (현행과 같음)			
제4조의 2 (담보취득제한의 예외 등) ① 「규정」 제3조의 2에서	한국은행 등 재가 담보취득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라함은	제4조의 2 (담보취득제한의 예외 등)	① (현행과 같음)		
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.		1. 중소기업(도소매 및 음식숙박업,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		-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개정에 따른	
서비스업,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영위기업 제외)에 대한 시설		서비스업,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영위기업 제외)에 대한 시설		조문 정비	
자금취급과 관련한 「규정」 제3조의 2 제3호, 제4호 및 제6호		자금취급과 관련한 「규정」 제3조의 2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		○ 기업소유부동산의 담보취득제한 여부	
에서 정한 비업무용부동산, 유흥토지등 및 제3자명의부동산		비업무용부동산 및 제3자명의 부동산(단, 「규정」 제3조의 2		판정시 「토지조과이득세법」에 의한	
(단, 「규정」 제3조의 2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)		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)의 담보취득		유흥토지의 적용배제	
의 담보취득					
(신	설)	2. 중소기업(무역업 이외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, 금융보험부동산		- 중소기업은전자금대출 및 지급보증 취급시	
		및 사업서비스업,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영위기업 제외)에 대한		제3자명의부동산 담보취득제한 완화	
		운전자금대출 및 지급보증 취급과 관련한 기업주(법인대표)와			
		그 배우자명의 거주주택(단, 「규정」 제3조의 2 제5호에서			
		정한 사치성재산 제외)의 담보취득			
(신	설)	3. 동업관계로 운영되는 중소기업(무역업이외의 도소매 및		- 동업인명의 부동산담보취득제한 완화	
		음식숙박업,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, 사회 및 개인			
		서비스업 영위기업 제외)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및 지급보증			
		취급과 관련하여 동업기업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다른			
		동업인이 동업기업에 업무용으로 제공하고 「규정」 제3조의 2			
		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되지 않는 부동산의 담보취득			

명	개	정	비
(신 설)	4. 현지법인에 대한 외외금융취급이나 현지금융과 관련된 자금보존 취급시 모기업명의 국내부동산(단, 「규정」 제3조의 2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)의 담보취득		- 현지법인에 대한 여신취급시 모기업명의 국내부동산담보취득 허용
(신 설)	5. 산업합리화지점기업체, 관리기업체, 분류기업체 및 기업정성과 금융수혜기업체 등 부실기업체와 신용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도산의 우려가 있는 기업체에 대한 여신과 관련한 부동산의 담보취득		- 부실기업체여신관련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 완화
2. 농어면에 대한 농수축산자금 및 소액가계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한 「규정」 제3조의 2 제4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유휴토지 등 및 제3자명의부동산(단, 「규정」 제3조의 2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)의 담보취득	6. (현행과 같음)		- 호 제한
② 금융기관은 담보취득한 부동산이 취득후, 담보취득제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시설 확인시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당해 부동산담보를 해지하여야 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		
제5조 ~ 제9조 (개정 및 신설) (신 설)	제5조 ~ 제9조 (현행과 같음)		
	부	적	
	이 세칙은 1991. 4. 6 부터 시행한다.		- 시행일자 명시